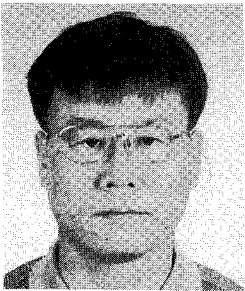


종계, 부화의 합리적인 등록제 규모

진정한 질병차단을 위해 등록규모 최소화 해야...



최 성 갑
(도원농장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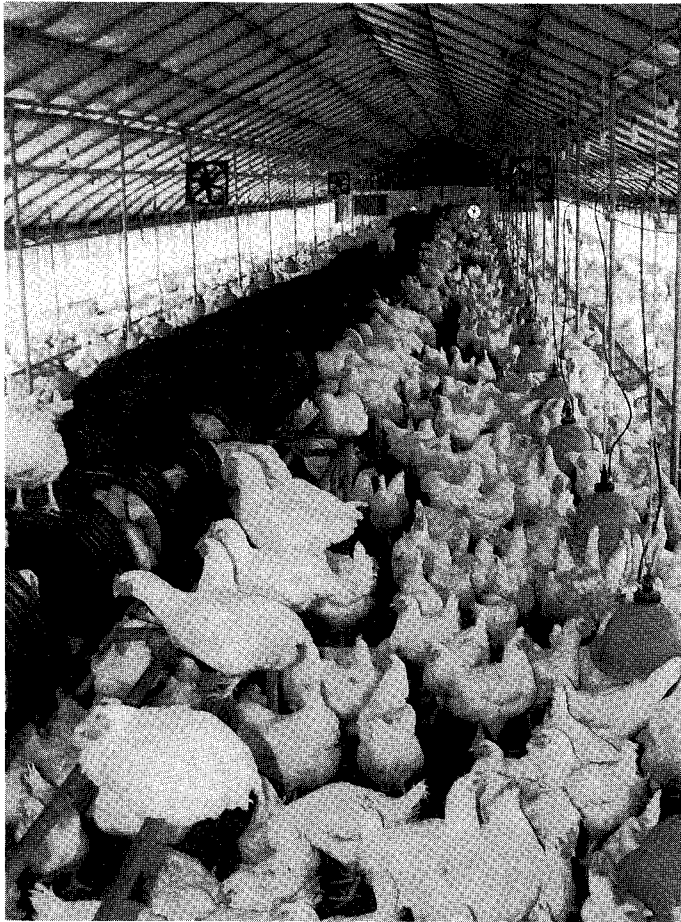
농림부는 축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부화업, 종축업, 양계업 등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되게 되었다.

필자는 종축업중 종계(육용종계)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 혼자만의 생각으로 종계인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보완하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종계업의 등록은 업계에서 수차에 걸쳐 허가제로 갈 것을 주장한바 있다. 허가제로 가고자한 이유는 질병을 철저히 관리하여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무분별한 백세미의 생산으로 질병의 만연을 초래하는 현상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신고제인 축산업을 허가제로 하여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등록제로 최종 개정이 되는데 그쳐 아쉬움은 있으나, 우리는 등록제라도 허가제 못지 않은 효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등록제 시행시에 등록제의 합리적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농림부에서는 1만수 이상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필자는 이번 등록제의 규모를 천수규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1,000수 이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금 뉴캐슬, 가금티푸스 등 모든 질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하여 양축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등록 규모를 낮추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질병의 확산에는 수수에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질병을 차단하는데는 모든 닭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계의 등록제로 가는 목적이 축산업의 규모화와 밀집사육의 증가에 따라

최근 늘어가는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수수에 관계없이 등록제를 하여야하나, 현실의 상황이, 즉 닭의 사육의 경우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1,000수 이상은 등록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0에서 200수 정도를 사육하는 소수의 일반사육자도 개중에는 있지만 그 수자는 미미하며, 지금 모든 사육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1,000수 이하의 전업농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소수사육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 외 1,000수 이상이 되면 질병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들을 질병차원에서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는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등록제의 본래 목적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질병의 전파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백세미의 경우 한 계절을 위하여 10,000수 이하의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되는 백세미는 어찌막을 수 있겠는가?

등록을 하지않을 경우 가축 사육을 못하게 할 것으로 알려졌는 바 이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등록을 하지 않을 시 그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반 육계의 사육과는 달리 종계 사육의 경

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강력한 시행규칙이 필요 하며, 법을 지키는 자만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는 없도록 강력한 규제를 위한 처벌규정 또한 강력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계에서의 질병이 문제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종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농장에서 등록도 아니하고 종계검정은 물론 추백리 검사 자체도 받지않는 농장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병의 전파는 아주 당연하다고 판단 되어진다.

질병의 통계에서 보듯이 백세미를 많이 생산하는 시기에 양계의 질병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종계도 아닌 실용계에서 병아리를 생산할뿐 아니라, 종계의 형태로 길러지지 않고 산란계로 사용하다

가, 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된 산란계에서 한철만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백세미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종계는 좋은 환경에서 철저히 사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종계의 등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대로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등록제를 시행한다면 그 수수는 최소 1,000수 이상이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며, 또한 종계의 경우 더 엄격한 관리로 등록 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을시 처벌의 강도를 아주 강하게 하여 시행되어야 법의 존엄성이 지켜질 것이며 문서로만 되어지는 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동 광 공 업

대 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